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

제 정 일	2021. 4.15
개 정 일	2023. 2. 1
개정차수	2차
담당부서	원격교육지원센터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심의 및 품질관리 (개정 2023. 2. 1)
2.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 2. 1)
3. 교직원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및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확산
4. 촬영 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 2. 1)
5. 기타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 3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책임교수, 연구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개정 2023. 2. 1)

③ 책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임명하고,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의 운영을 전담한다.

제 4조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5. 1, 2023. 2. 1)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 2023. 2. 1)

1. 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교양교육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2. 1)
2. 위원장은 원격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며,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2. 1)
3. 관리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해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2. 1)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1)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기본 계획 수립 (개정 2023. 2. 1)
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과목 개설 (개정 2023. 2. 1)
3. 원격교육의 품질관리 및 개선 (개정 2023. 2. 1)
4.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2. 1)
5. (삭제 2023. 2. 1)
6. (삭제 2023. 2. 1)
7. (삭제 2023. 2. 1)
8. (삭제 2023. 2. 1)
9. (삭제 2023. 2. 1)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 5. 1]

제 5조 (세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척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